

의안번호	2200957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4.10.2.
추 계 번호	24B13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의 금리로 1억원(10년 원금균등상환)을 융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융자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59조 3,932억원(연평균 11조 8,78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 2)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융자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75조 807억원(연평균 15조 161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6조의2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등)	시나리오 1 (소득 7천만원 미만)	330,098	66,102	66,007	65,911	65,814	593,932	118,786
	시나리오 2 (소득 1억원 미만)	400,155	87,854	87,727	87,600	87,471	750,807	150,161

-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상품 가입가구 중 일부가 개정안의 융자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금의 융자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대출원금을 거치기간 없이 10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은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액 추정치: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 1 (소득 7천만원 미만)	33,010	39,620	46,221	52,812	59,393	231,055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 2 (소득 1억원 미만)	40,015	48,801	57,574	66,334	75,081	287,804

주 1. 대출원금의 부도율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주계기간(5년간)은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가정함
 2. 개정안에 따라 자녀출산 시 정부가 기금을 통해 융자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상환액은 동금액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등)	국가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음. 이 경우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1항) 1.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1억원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 상환기한은 융자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함(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음(제4항) 1. 자녀가 1명인 경우: 이자의 전부 2. 자녀가 2명인 경우: 원금의 100분의 50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원금의 전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지원사업과 용자에 필요 한 재원은 일반회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등에 의함(제5항)	의무규정
		주택구입자금등 용자의 신청절차, 방법,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제7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6조의2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등의 용자 등)	○	·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을 용자하고, 자녀 출산 시 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 상됨 - 신혼부부에 대한 용자방법, 자녀 수 인정방법 등이 대통 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알 수 없으나, 통계청 신혼부부 통 계를 활용하여, 용자 소요비용을 추산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연이율 1%로 10년 상환 1억원을 용자하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도록 하여 이를 일반회계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용자의 신청절차, 방법,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용자사업의 방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사업대상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기 곤란함

-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택자금 융자상품에서 나타나는 융자조건(부부소득 7,5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를 통해 파악가능한 신혼부부 소득수준, 대출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함
 - 주택 소유여부: 융자 시점 무주택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시나리오 1),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¹⁾
 -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활용하여, 무주택 가구비율, 대출비율, 자녀 출산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대출액은 1억원으로 하며, 가구당 1회, 10년 이내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원금균등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함
 - 대출상품의 대손율에 관한 정보가 불확정적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대손율은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융자금은 일반회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연이율 1%로 융자하므로 재원조달 시 채권발행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재원조달 관련 계획안이 불확정적이므로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상품 가입가구 중 일부가 개정안의 융자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금의 융자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들 가구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금융자사업비 감소분은 차감하지 않음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참고

1)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 관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판매중인 상품의 소득기준은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전세금 대출(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이하)임

*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부부합산 소득 현황(2023. 12)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소득 현황]

(단위: 쌍, %)

	전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7천만원 미만	7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소득*
5년 이내	1,032,253	9.9	13.7	20.1	20.6	19.4	16.3	6,375

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무주택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회, 연이율 1%의 융자금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융자금과 이들 가구의 자녀출산 시 예상되는 이자경감액, 원리금상환액의 합산금액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행 신혼부부 주택 관련 대출사업과 가용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인 신혼부부(시나리오 1)와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융자사업비를 추산함
 - － 융자금액은 신혼부부 수에 1억원 융자금을 곱하여 추정
 - 다만,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자녀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 및 원금은 출생자녀의 수, 출생시기를 시점별로 추산하여야 하나 이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업 첫 해에 추계대상 신혼부부(혼인 1년차~5년차) 중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 전체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첫 해에 추정되는 자녀수별 이자 및 원금 지원액을 추정하여 제시함

가. 추계대상

-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0%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2.0% 수준(2022년 기준)

[표 3]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2018~2022년

(단위: 쌍,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율
1년차	252,785	236,580	214,266	191,904	185,830	-7.4%
2년차	252,564	247,187	230,637	209,466	187,683	-7.2%
3년차	266,589	247,132	241,248	225,865	204,883	-6.4%
4년차	272,771	261,425	241,544	236,827	221,351	-5.1%
5년차	277,697	267,793	256,055	237,393	232,506	-4.3%
합계	1,322,406	1,260,117	1,183,750	1,101,455	1,032,253	-6.0%
총인구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51,692,272	-
총인구 중 신혼부부 비중	2.6%	2.4%	2.3%	2.1%	2.0%	-
총인구 중 1년차 신혼부부 비중	0.49%	0.46%	0.41%	0.37%	0.36%	-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3.12., 통계청 인구총조사

- 연도별 신혼부부수는 전년도 혼인연차에 연동되어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4]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감소율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1년차→2년차	-	-2.2%	-2.5%	-2.2%	-2.2%	-2.3%
2년차→3년차	-	-2.2%	-2.4%	-2.1%	-2.2%	-2.2%
3년차→4년차	-	-1.9%	-2.3%	-1.8%	-2.0%	-2.0%
4년차→5년차	-	-1.8%	-2.1%	-1.7%	-1.8%	-1.9%

- 혼인연차를 기준으로 1년차 신혼부부 수는 총인구 대비 비중(0.36%, 2022년 기준)을 적용하고, 2년차 이후 신혼부부 수는 각 혼인연차별 전년 대비 최근 5년간의 평균감소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용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용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신혼부부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쌍)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년차	185,802	185,531	185,263	184,995	184,722	926,313
2년차	181,778	181,544	181,279	181,018	180,755	906,375
3년차	177,810	177,774	177,546	177,287	177,030	887,447
4년차	174,198	174,240	174,206	173,982	173,728	870,354
5년차	176,569	170,966	171,007	170,973	170,754	860,269
합계	896,157	890,056	889,301	888,254	886,989	4,450,757

나. 용자사업비

- (용자사업 대상) 개정안에 따른 용자대상은 신혼부부 중 무주택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시나리오1)이거나 1억원미만(시나리오 2)의 대출을 보유한 가구
-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나타난 전체 신혼부부 중 무주택비율, 혼인연차별 소득현황 및 대출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된 신혼부부 가구 수에 곱하여 추정함
 - 용자사업을 위한 신혼부부 관련 통계 지표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의 수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자녀 및 주택 보유현황

(단위: 쌍, %)

		전체	주택미소유	주택소유
5년 이내		1,032,253	57.6	42.4
혼인연차별	1년차	185,830	66.1	33.9
	2년차	187,683	62.8	37.2
	3년차	204,883	58.9	41.1
	4년차	221,351	54.3	45.7
	5년차	232,506	48.8	51.2

주 1) 전체 신혼부부 수에는 초혼, 재혼 외 미상이 포함

2) 부부 중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 전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를 말함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3.12.

[표 7]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소득현황

(단위: 쌍)

		전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 1억원미 만	1억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비율
5년 이내		1,032,253	9.9	13.7	20.1	20.6	19.4	16.3	—
혼 인 연 차 별	1년차	185,830	9.0	13.2	19.5	21.0	20.6	16.7	62.7
	2년차	187,683	9.5	14.0	20.1	20.4	20.5	15.5	64.0
	3년차	204,883	10.2	13.6	20.5	20.8	19.1	15.8	65.1
	4년차	221,351	10.6	13.7	20.6	20.1	19.1	15.9	65.0
	5년차	232,506	9.9	13.9	19.6	20.8	18.2	17.6	64.2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3.12.

[표 8]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대출현황

(단위: 쌍, %)

		대출보유율	금융권 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	천만~ 1억원 미만	1억원~ 2억원 미만	2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신혼부부		908,483 (88.0%)	19	15.1	28.3	18.4	19.3
혼인 연차별	1년차	159,752 (86.0%)	22.4	16	28.7	18	14.9
	2년차	165,601 (88.2%)	19.3	15.3	29.3	18.1	18
	3년차	181,970 (88.8%)	18.1	13.9	29.8	18.4	19.8
	4년차	196,063 (88.6%)	18.3	15.4	26.9	18.9	20.6
	5년차	205,098 (88.2%)	17.5	14.9	27.1	18.6	21.9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3.12.

□ (시나리오 1)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대출을 곱하여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9] 용자대상(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 수 추정결과: 2025~2029년
(단위: 쌍)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년차	66,199	66,102	66,007	65,911	65,814	330,033
2년차	64,464	—	—	—	—	64,464
3년차	58,795	—	—	—	—	58,795
4년차	54,474	—	—	—	—	54,474
5년차	86,166	—	—	—	—	86,166
합계(신규)	330,098	66,102	66,007	65,911	65,814	593,932
합계(누적)	330,098	396,200	462,207	528,118	593,932	2,310,555

주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용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용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 2)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대출을 곱하여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0] 용자대상(소득 1억원 미만) 신혼부부 수 추정결과: 2025~2029년
(단위: 쌍)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년차	87,982	87,854	87,727	87,600	87,471	438,634
2년차	85,080	—	—	—	—	85,080
3년차	78,306	—	—	—	—	78,306
4년차	78,306	—	—	—	—	78,306
5년차	70,481	—	—	—	—	70,481
합계(신규)	400,155	87,854	87,727	87,600	87,471	750,807
합계(누적)	400,155	488,009	575,736	663,336	750,807	2,878,043

주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용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용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시나리오 1) 혹은 1억원 미만(시나리오 2)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대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0년 상환 1억원(연 1%)을 대출할 경우 융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추계 첫 해에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이후에는 혼인 1년차 신혼부부에 대한 융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

[표 11] (시나리오 1)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 융자금 추정결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년차	66,199	66,102	66,007	65,911	65,814	330,033
2년차	64,464	—	—	—	—	64,464
3년차	58,795	—	—	—	—	58,795
4년차	54,474	—	—	—	—	54,474
5년차	86,166	—	—	—	—	86,166
합계	330,098	66,102	66,007	65,911	65,814	593,932

주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융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융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표 12] (시나리오 2) 소득 1억만원 미만 신혼부부 융자금 추정결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년차	87,982	87,854	87,727	87,600	87,471	438,634
2년차	85,080	—	—	—	—	85,080
3년차	78,306	—	—	—	—	78,306
4년차	78,306	—	—	—	—	78,306
5년차	70,481	—	—	—	—	70,481
합계	400,155	87,854	87,727	87,600	87,471	750,807

주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융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융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원금균등상환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도별 상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연 1%의 1억원을 융자하고, 10년 이내에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추계기간인 5년동안 매년 발생하는 상환원금, 이자액, 상환잔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3] 원금균등상환 시 연차별 이자 및 상환액

(단위: 원)

원금균등 (원금을 균등하게 부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상환원금	9,999,996	9,999,996	9,999,996	9,999,996	9,999,996
이자액	954,166	929,861	754,167	654,166	554,167
납부액	10,954,162	10,929,857	10,754,163	10,654,162	10,554,163
잔액	90,000,000	80,000,000	70,000,000	60,000,000	50,000,000
원금균등 (원금을 균등하게 부과)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상환원금	9,999,996	9,999,996	9,999,996	9,999,996	9,999,996
이자액	454,167	354,166	254,167	154,167	54,166
납부액	10,454,163	10,354,162	10,254,163	10,154,163	10,054,162
잔액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환원리금 조회 결과를 재정리

- 대출원금의 부도율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계기간은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가정함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시나리오 1)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시나리오 2)의 예상되는 융자원금 상환액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4] 용자대상 신혼부부 수 원금 상환액 추정결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 1 (소득7천만원 미만)	33,010	39,620	46,221	52,812	59,393	231,055
시나리오 2 (소득 1억원미만)	40,015	48,801	57,574	66,334	75,081	287,804

주 : 추계의 편의를 위하여 추계 첫 해 용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신규 1년차 신혼부부가 용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

다. 이자 및 원금 지원비용 : 2025년 기준 추계값만 제시

-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는 이자액을 50% 지급, 둘째는 원금의 50%, 셋째는 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출 신혼부부의 연도별 출산자녀 수 추정이 곤란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2025년 기준 대출 신혼부부의 자녀수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원비용을 추산하여 제시함
 - 혼인연차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의 첫째~셋째이상 자녀 비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본 추계에서 가정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대출이 있는 가구의 자녀 출산율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하의 주택미소유 부부의 혼인연차별 자녀비중을 적용함
 - 다만, 연도별 신혼부부의 자녀출산 현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2025년 추계 첫 해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참고로 제시함

[표 15] 주택미소유 신혼부부의 혼인연차별 자녀수: 2022년 기준

(단위: 쌍)

		전체	주택미소유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합계
5년 이내 신혼부부 수		1,032,253	224,421 21.7%	75,159 7.3%	14,486 1.4%	314,066 30.4%
혼 인 연 차 별	1년차	185,830	22,629 12.2%	6,212 3.3%	2,187 1.2%	31,028 16.7%
	2년차	187,683	41,532 22.1%	7,466 4.0%	2,339 1.2%	51,337 27.4%
	3년차	204,883	53,191 26.0%	12,701 6.2%	2,711 1.3%	68,603 33.5%
	4년차	221,351	55,705 25.2%	20,689 9.3%	3,145 1.4%	79,539 35.9%
	5년차	232,506	51,364 22.1%	28,091 12.1%	4,104 1.8%	83,559 35.9%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3.12.

□ 이상의 가정에 따라 2025년 융자대상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수 및 해당
년도에 지급이 예상되는 이자 및 원금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6] (시나리오 1) 2025년 기준 융자대상 신혼부부의 혼인연차별 자녀수 추정치

(단위: 명)

	1자녀	2자녀	3자녀	합계
1년차	8,061	2,213	779	11,053
2년차	14,265	2,564	803	17,632
3년차	15,264	3,645	778	19,687
4년차	13,709	5,092	774	19,575
5년차	19,035	10,410	1,521	30,966
합계	70,334	23,924	4,655	98,913

주: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중 융자대상 가구의 예상되는 자녀수 추정 결과

[표 17] (시나리오 2) 2025년 기준 융자대상 신혼부부의 혼인연차별 자녀수 추정치
(단위: 명)

	1자녀	2자녀	3자녀	합계
1년차	10,714	2,941	1,035	14,690
2년차	18,827	3,384	1,126	23,337
3년차	20,330	4,854	1,036	26,220
4년차	17,737	6,588	1,001	25,326
5년차	13,834	7,566	1,105	22,505
합계	81,442	25,333	5,303	112,078

주: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중 융자대상 가구의 예상되는 자녀수 추정 결과

□ (시나리오 1) 대출 신혼부부 중 2025년 1자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의 50%, 2자녀는 원금의 50%, 3자녀는 원금 전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8] 2025년 대출 신혼부부의 자녀별 이자 및 원금지원액 추계결과: 2025년 기준
(단위: 억원)

혼인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이자 비용	1자녀수(a)	8,061	14,265	15,264	13,709	19,035	70,334
	이자단가 (b, 원)	954,166	954,166	954,166	954,166	954,166	—
	이자지원액 ($A=a \times b \times 50\%$, 억원)	38	68	73	131	91	401
원금 지원액	2자녀수(c)	2,213	2,564	3,645	5,092	10,410	23,924
	3자녀수(d)	779	803	778	774	1,521	4,655
	원금지원액 ($B=c \times 0.5 + d \times 1.0$, 억원)	1,886	2,085	2,601	3,320	6,726	16,617
합계(A+B)		1,924	2,153	2,673	3,451	6,817	17,018

주: 추계 첫 해인 2025년 융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2025년 기준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하여 연 1% 이율로 1억원 대출한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에 따라 1자녀는 이자액의 50%, 2자녀는 원금의 50%, 3자녀는 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9] 2025년 대출 신혼부부의 자녀별 이자 및 원금지원액 추계결과: 2025년 기준
(단위: 억원)

혼인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이자비용	1자녀수(a)	10,714	18,827	20,330	17,737	13,834	81,442
	이자단가(b, 원)	954,166	954,166	954,166	954,166	954,166	—
	이자지원액 ($A=a \times b \times 50\%$, 억원)	51	90	97	85	66	389
원금지원액	2자녀수(c)	2,941	3,384	4,854	6,588	7,566	25,333
	3자녀수(d)	1,035	1,126	1,036	1,001	1,105	5,303
	원금지원액 ($B=c \times 0.5 + d \times 1.0$, 억원)	2,506	2,818	3,463	4,295	4,888	17,970
합계A+B)		2,557	2,908	3,560	4,380	4,954	18,359

주 : 추계 첫 해인 2025년 융자대상 신혼부부가 모두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

라.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의 금리로 1억원(10년 원금균등상환)을 융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융자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59조 3,932억원(연평균 11조 8,78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 2)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융자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75조 807억원(연평균 15조 161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자금 융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소득 7천만원 미만)	330,098	66,102	66,007	65,911	65,814	593,932	118,786
시나리오 2 (소득 1억원 미만)	400,155	87,854	87,727	87,600	87,471	750,807	150,161

-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상품 가입가구 중 일부가 개정안의 융자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금의 융자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융자원금이 거치기간 없이 10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21] 개정안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액 추정치: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 1 (소득 7천만원 미만)	33,010	39,620	46,221	52,812	59,393	231,055
시나리오 2 (소득 1억원 미만)	40,015	48,801	57,574	66,334	75,081	287,804

- 주 1. 대출원금의 부도율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계기간(5년간)은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가정함
2. 개정안에 따라 자녀출산 시 정부가 기금을 통해 융자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상환액은 동금액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중인 신혼부부 주택용자상품 가입가구 중 일부가 개정안의 용자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금의 용자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